



퇴직연금의 이해 (7):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장치

오병국 연구원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금 제도, 퇴직급여우선변제 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수급권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
- 최소적립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¹⁾ 제16조에 의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사내에 적립해야 하는 것을 말함.
 - 현행 근퇴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여기서 기준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또는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중 더 큰 금액임.
 - (적기시정 조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 만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함.
- 또한, 사용자인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연금지급 보증장치로서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음.
 -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근퇴법에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총자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이하에서는 ‘근퇴법’으로 통칭함.

-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법적으로 보장됨.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범위까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은 기업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일정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결정함.
 - 퇴직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은 월별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 (예금자보호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분에 한하여 금융기관 도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한도로 지급보장이 이루어짐.

〈표 1〉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장치 비교

구분	보상범위	적용대상	관련법
최소적립금제도	최소적립금 이내	확정급여(DB)형	근퇴법 제16조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최종 3년분에 한정	퇴직급여 대상	근퇴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최종 3년분에 한정, 월별 상한액 설정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예금자보호제도	5,000만 원 한도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	예금자보호법